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6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1.28 공포, 법률 제6236호)됨에 따라 동 법의 근거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에 관한 수수료 요율 신설(안 별표 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(수수료)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
-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보와 컴퓨터 통신(인터넷)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없으므로
- 타 시·군과 권형을 유지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
- 답 :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.

- 문 : 수수료를 책정한 산출근거와 기준은
- 답 : 전문가가 작성한 수수료원가계산서와 인근 시·군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타 시·군과 권형을 유지하여 책정하였음.
- 문 : 수수료를 책정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 의견을 수렴하였는지
- 답 :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간부급과 조율을 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